

수원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나62577 판결 [공사대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5. 10.

판 결 선 고 2022. 7. 1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7. 선고 2020가소903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89,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7.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1. 3. 17. 제1심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1. 3.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판결정본을 확인한 2021. 3. 17. 무렵에서야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 내인 2021. 3. 22.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9.부터 2018. 6. 15.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가설사무실공사, 철거 공사 등 합계 41,189,55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1,189,555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189,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수행한 ‘C 증축공사 및 대수선공사’ 중 원고 시공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C에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대납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대 명목으로 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채권을 원고의 위 나머지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21. 피고에게 공급자를 피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 품목을 장비대,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금액을 22,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8. 9. 3. 피고에게 '2018. 6. 15.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21,189,555원이었으나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8. 6. 21. 피고에 대하여 장비대 22,000,000원 상당의 매입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면 위 일자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810,445원(= 22,000,000원 - 21,189,555원) 남아 있다'는 취지의 원고 작성의 피고와의 기간별 거래보고서를 첨부한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6. 2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그때까지 남아 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1,189,555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22,000,000원 상당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위 22,000,000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재광, 판사 이명선, 판사 이나경